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용기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6521 발의연월일: 2022. 7. 19.

발 의 자:전용기·백혜련·임호선

신정훈 • 고용진 • 홍성국

한병도 • 정성호 • 이원욱

서삼석 · 안규백 · 최혜영

조정식 · 윤재갑 · 고민정

의원(15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발표한 '2021년 국민문화예술활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민의 30.5%가 영화관에서 영화관람하는 것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한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미술전시회, 공연관람 보다도 6배나 높은 수치임. 또한 한국갤럽 조사인 '2021년 여가활동 경험률'에 따르면 47%의 국민들이 '영화관에서 영화보기'를 국내 여행 다음으로 많이 하는 여가활동으로 꼽았음.

높은 활동비율에도 불구하고 영화관 입장료에 대한 정부의 지원은 현재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전시회·박물관·공연장 입장료 등이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어 있는 것과 비교하면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신용카드 등으로 영화관 입장료를 지급한 경우에도 전시회 • 박물

관·공연장 입장료와 동일한 소득공제 혜택을 주어 국민들의 여가활동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고 함(안 제126조의2).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을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용 분""으로. "도서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 0"으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을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미술관에 입장하기"를 "미술관에 입장 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로.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박물관 · 미 술관·영화관사용분""으로 하며, 같은 목 후단 중 "박물관·미술관사용 분"을 "박물관·미술관·영화관사용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제5호, 같은 항 제6호나목 및 같은 호 다목1) 중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각각 "도서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 용분"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6조의
2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분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개 정 안
제126조의2(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에 대한 소득공제) ① (현행과
같음)
2
1.•2. (현행과 같음)
3
<u>"도서·신문</u>
· 공연·박물관·미술관·영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 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도서ㆍ공연ㆍ박물관・미술관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 (생략)

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 에 입장하기 위하여 문화 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 는 법인 또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금액(이하 "박물관 •미술관사용분"이라 한 다). 이 경우 법인 또는 사 업자의 규모(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 과 협의하여 정하는 매출 액 등의 기준에 따른다)에 따른 박물관•미술관사용 분의 인정방법 등에 관하

화관사용분"
<u>도서·공</u>
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
<u>0</u>
<u>도서 · 공연 · 박</u>
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용분
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가. (현행과 같음)
나
미술관
에 입장하거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영화상영관에 입장하기
<u>"</u> 박물관
·미술관·영화관사용분"
<u>박물관·미술관·영</u>
화관사용분

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 4. 제1항제2호 및 제4호의 금액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 통시장사용분 · 대중교통이용 분 및 도서・신문・공연・박 물관 · 미술관사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하고, 해당 과세연 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사용분 및 대중교통이용분에 포함된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불카드등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30(2 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 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카드 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6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 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직불 카드등사용분의 경우에는 100 분의 80)
- 5.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의 합계 액에서 전통시장사용분, 대중 교통이용분,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뺀 금액(해당 과세연도

<u>.</u>
4
<u>도서·신문·공연·박</u>
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용분
5

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 인 경우에는 <u>도서·신문·공</u> 연·박물관·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뺀 금액을 말한다. 이 하 이 항에서 "신용카드사용 분"이라 한다) × 100분의 15(2 020년 3월 1일부터 2020년 3 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3 0, 2020년 4월 1일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 드사용분의 경우에는 100분의 80)

6.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다만,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사용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에 대한 신용카드등소득공제금액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별표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가. (생략)

나.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보다 크고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해당 과세 연도의 총급여액이 7천만

<u>도서 • 신문 • 공</u>
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
사용분
6
가. (현행과 같음)
나

원 이하인 경우에는 <u>도서</u> · 신문 ·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용분을 추가로 합친 금액)보다 작거나 같은 경우: 신용카드사용분 × 1 00분의 15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드사용분) × 1 00분의 30

다. 최저사용금액이 신용카드 사용분과 직불카드등사용 분을 합친 금액보다 큰 경 우: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 1) 해당 과세연도의 총급여 액이 7천만원 이하인 경 우: 신용카드사용분 × 10 0분의 15 + (직불카드등 사용분 + 도서・신문・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 용분) × 100분의 30 + (최저사용금액 - 신용카 드사용분 - 직불카드등 사용분 - 도서・신문・ 공연 · 박물관 · 미술관사 용분) × 100분의 40

2) (생략)

7. (생략)

<u>도</u> 서
·신문·공연·박물관·
미술관 · 영화관사용분
다
-1.
1)
<u>도서·신문·</u>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용분
<u>도서·신문·</u>
공연 · 박물관 · 미술관 ·
영화관사용분
2) (현행과 같음)
7. (현행과 같음)

③ ~ ⑩ (생 략)

③ ~ ⑩ (현행과 같음)